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28
----------	------

발의연월일 : 2024. 10. 10.

발 의 자 : 민병덕 · 이수진 · 한민수  
김재원 · 이기현 · 황명선  
김현정 · 이언주 · 권칠승  
윤준병 · 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의4제3항 신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함으로써 둘 사이의 동반 성장과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포함하는 하도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p> <p style="padding-left: 2em;">· 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조(목적) 이 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함으로써 둘 사이의 동반 성장과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p> <p style="padding-left: 2em;">·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포함하는 하도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p>